#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8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어기구 • 이개호 • 황 희

박 정ㆍ허종식ㆍ소병훈

박수현 · 문금주 · 정준호

이상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치료(이하 "수목진료"라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경력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법률 제 호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를 "예방(수세(樹勢) 유지· 관리를 포함한다)하거나 치료(수세 회복을 포함한다)하기"로 한다.

제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 1.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 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 개인 소유의 수목으로서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3.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수목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자(수목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상시 고용 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4.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300세

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 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10제1항제4호 중 "제21조의9제5항"을 "제21조의9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의11제3항 중 "사항, 협회의 업무"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 훈련
-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
- 3. 수목진료 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 4.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 5. 나무의사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의1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 4. 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보
  -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경력·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 (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 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5항제7호 중 "제21조의9제5항"을 "제21조의9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9제7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나무의사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21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	6의2
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	
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	예방(수세(樹勢) 유지•
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리를 포함한다)하거나 치료
	(수세 회복을 포함한다)하기-
6의3. ~ 14. (생 략)	6의3. ~ 14. (현행과 같음)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	4
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	
다. <u>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u>	<u>&lt;단서 삭제&gt;</u>
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각 호의 경우에는 나무병원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 1.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 개인 소유의 수목으로서 소 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3.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수목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수목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상시 고용된 나무의사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4.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u>⑤</u> (생 략) <신 설>

#### ⑥ (생략)

-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 조소 등) ① 시·도지사는 나무 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의2. ~ 6. (생략)

② ~ ⑦ (생 략)

-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저 ·② (생략)
  -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u>사항, 협회의 업무</u>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

⑦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				
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				
<u>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8 (현행 제6항과 같음)				
세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				
소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9제6항				
4의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세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사항				
<u> </u>				

⑥ (청해 제5하고 가으)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④</u> (생 략)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략)

-----

----

<u>④</u>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u>를</u> 수행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

- 3. 수목진료 기술의 진흥 및 정 보 교류
- 4.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업무지도 및 관리
- 5. 나무의사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 하는 업무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 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신 설>

-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 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 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u>각</u>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u>다.</u>
  -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 4. 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 보
  -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 <u>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u>

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 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 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 장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 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 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 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 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 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 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 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

제54조(벌칙)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 에게 빌려준 자

<신 설>

8. • 9. (생략)

⑥ ~ ⑧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5. (생 략) <신 설>

7	· <u>-</u>	세2
<u>7</u>	의	2.
	여	ι
	<u>유</u>	-시
8	. •	9.
(	3	$\sim$
제5	7 <i>3</i>	<u> </u>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렁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5					
1. ~ 6. (현행과 같음)					
7. <u>제21조의9제6항</u>					
<u>7</u> 의2. 제21조의9제7항을 위반하					
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 9.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1의5. (현행과 같음)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					
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관계 기					
관·법인 또는 단체					

<u>&lt;신 설&gt;</u>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
	하여 경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나무의사
	<u> </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